

## 신문방송국운영규정

2019.08.22.제정

<신문방송국>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동명대학교와 관련된 각종 소식과 정보, 학술·문화 콘텐츠를 효과적으로 보도, 중계, 제작, 공유하기 위하여 신문방송국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기능) 신문방송국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방송국 운영 및 신문 발행, 방송 제작·송출
2. 대학 유관기관과의 콘텐츠 제작 및 교류

제3조(구성) 신문방송국에는 신문방송국원을 두며, 주간이 지도·관리한다.

제4조(신문방송편집위원회) ① 동명대신문(이하 “신문”이라 한다)발행과 영상콘텐츠 제작 및 송출에 관한 자문을 위한 신문방송편집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두며 신문의 지면 편집, 사설 및 칼럼 집필, 방송 제작, 편성, 송출에 대한 자문의 역할을 한다.

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총 6~10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③ 위원회는 신문방송국 주간을 당연직 위원장으로 하며, 임명직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총장이 위촉한다.

⑤ 총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회의를 소집한다.

⑤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한다.

제5조(신문방송국원 자격) 신문방송국원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구비하여야 한다.

1. 동명대학교에 재학 중인 자
2. 언행과 품행이 단정한 자
3. 징계 사실이 없는 자
4. 학생회 간부 및 기타 단체의 회원이 아닌 자

제6조(원고료 및 출연료) 발행된 기사와 방영된 방송 제작물에 대해서는 소정의 원고료와 출연료를 지급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.

### 부 칙

이 규정은 2019년 8월 22일부터 시행한다.